

법령자료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박 상 기
법무부장관

● 법률 제15150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형”을 “실형”으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제66조의2제4항”을 “제66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①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 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의5제2항 중 “앞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를 “앞(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로 한다.

제66조의6제2항 중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로 한다.

제5장의2에 제6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① 제66조의5에 따른 전자

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77조의2제3항제4호 중 “선임·임기”를 “구성·수·임면·임기”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제77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임원과 운영위원”을 “임원”으로 한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7조의6의 제목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운영”을 “이사회는 대한공증인협회 업무”로 한다.

제85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에 제8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4(벌칙) ① 공증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증인이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보조자(이하 이 조에서 “공증보조자”라 한다)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증인이나 공증보조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공증인이나 공증보조자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부터 공증사무를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5제2항, 제66조의6제2항 및 제6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한공증인협회 회칙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한공증인협회는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제77조의2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

을 변경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개정이유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한공증인협회 임원의 구성 및 수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참여인의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함(제13조제1호, 제33조제3항제1호의2 신설).
- 나.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유언공증),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참석인증)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를 제고함(제56조, 제66조의2제4항 신설).
- 다.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결사항을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탄력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법인의사록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도록 함(제66조의2제1항 단서).
- 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제도를 도입함(제66조의5 제2항 및 제66조의6제2항, 제66조의12 신설).

마. 변화된 공증실무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칙으로 임원의 구성 및 수를 정하도록 하여 협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총회의 구성원을 대의원으로 하던 것을 회원으로 변경하는 등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제77조의2 및 제77조의4부터 제77조의6까지).

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함(제8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사. 공증인이나 공증인의 보조자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8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법률제15150호(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관보 제19151호(2017. 12. 12.)에 게재된 “법률제15150호(공증인법일부개정법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법 제 처 장

공포 법률	정정 내용	비 고
<p>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u>제16조</u>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 ----- ----- <u>법무부</u> <u>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u> <u>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u> <u>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17. 12. 12. 전자관보 6쪽 24째줄</p>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6월 19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박 상 기
법무부장관

● 대통령령 제28976호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을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제38조의3의 제목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전자문서의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앞에서”를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상도

2. 운영체제

3. 그 밖에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6조의12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법 제66조의11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개발·보급한 시스템(이하 “전자공증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것.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진위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할 것

④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게 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본인으로 하여금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⑥ 지정공증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증 거부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증인법 일부 규정의 시행) 법률 제15150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5 제2항, 제66조의6제2항 및 제66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지정공증인이 일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인증을 하기 위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및 본인확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아 공증인의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인의사록의 범위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인의사록의 인증 제외대상인 경미한 사항(제37조의3제2항)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아 공증인의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인의사록의 범위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나. 전자문서의 인증에 필요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제38조의3제2항 신설)

전자문서의 인증에 필요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으로 해상도, 운영체제 등을 정하고, 그 세부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 인증 시의 본인확인 절차(제38조의3 제3항 신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시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 인증 시의 대리촉탁 방법(제38조의3 제4항 및 제5항 신설)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게 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거부 및 이유 설명(제38조의3 제6항 신설)

지정공증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문서의 인증을 거부할 수 있되, 그 거부 이유를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 령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19일

법무부장관 인

● 법무부령 제932호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 중 “출석하여”를 “출석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앞에서”를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전자문서”를 “전자문서(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녹화한 경우에는 그 녹화 파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촉탁인에게 내주어야”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촉탁인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촉탁인에게 전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촉탁인에게 내주는 방법
2. 전자메일로 송신하는 방법
3. 촉탁인이 전자공증시스템에서 내려받도록 하는 방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중 “앞에서”를 각각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앞에서”를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지정공증인이 일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의무를 조정하는 등 같은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인증하는 경우 촉탁인 및 그 대리인의 공증사무소 출석의무 면제(안 제6조제3항 단서 신설, 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 및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촉탁

인의 전자화대상문서 제시 방법 추가(안 제7조제2항)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화문서 인증에 적합하도록 촉탁인이 전자화 대상문서를 우편 등을 이용하여 지정공증인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촉탁 인 등의 편의를 증진함.

다. 지정공증인의 녹화 파일 등록(안 제8조제2항)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문 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녹화한 파일을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 도록 함.

라. 전자공증 결과물의 전달 방식 추가(안 제8조제3항)

지정공증인은 인증을 완료한 전자문서를 촉탁인에게 전자메일로 송신하거 나 촉탁인이 직접 전자공증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함.

<법무부 제공>